

KBIZ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

수 신 전 조합원업체 대표이사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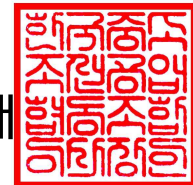
제 목 고용노동부의 '임금구분지급제' 도입에 따른 선박건조 공정별 도급계약 현황 조사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**선박제조시 조선소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, 조선소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** 하도록 하는 "임금구분지급제"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3. 동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에 따라 '27.1.1.일 시행예정에 있어 지난 '26.4.9일(목)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예정입니다. 이에 본 조합에서는 **신설된 근로기준법('27.1.1일 시행)의 임금지급여부 확인, 통보방법 등의 기준마련시 중소조선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예외기준 적용을 위하여 각 조합원업체별 도급계약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의거 오는 04.27 일(월)까지 본 조합으로 회신(jcshin@kosis.or.kr 또는 Fax.02-588-3671)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 아울러 '임금구분지급제' 관련 제도 반대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할 예정에 있사오니 조합원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.

'임금구분지급제' 제도 (근로기준법 제44조의 4 신설)	
주요내용	1.조선소는 협력사에 지급하는 비용 중 '임금'을 구분 지급 의무 2.조선소는 협력사에 지급한 임금이 협력사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↳협력사는 임금지급 확인 서류를 조선소 제출 의무 3.조선소는 협력사에서 임금 비용 외 타용도 사용 확인 의무
과태료	(위반시/매월단위) 조선소는 500만원~1천만원 과태료 부과
시행시기	2027.01.01.시행

첨 부 : '임금구분지급제' 도입에 따른 선박건조 공정별 도급계약 현황 조사표 1부. 끝.

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
이사장 김 성 태



전결(2026/04/21)

대리 홍태훈 부장 신정철 전무이사 한기원

협조자

시 행 회원사업부-32호 (2026. 04. 21.) 접 수

우 0668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03, 4층(조선회관) / http://www.kosis.or.kr

전화 (02)587-3121 전송 (02)588-3671 / jcshin@kosis.or.kr / 공개